

1. 개정이유

「신항만건설 촉진법」 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어, 경쟁방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

2. 주요내용

- 가. 경쟁 방식 적용을 위한 입찰공고에 필요한 내용 규정(안 제5조의2)
-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 공고에 포함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, 공고 이후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기준은 「항만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하도록 규정
 - 공고 이후 우선순위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마련 근거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쟁점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공고 대상 신항만건설사업 등)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9조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신항만건설사업의 목적
2. 신항만건설사업의 종류 및 개요
3.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기간
4. 지정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
5. 지정신청인의 평가기준 및 방식
6.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② 법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“사업계획, 재원조달 능력 등”이란 「항만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, 우선순위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공고 대상 신항만건설사업 등) ①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9조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신항만건설사업의 목적</u> <u>2. 신항만건설사업의 종류 및 개요</u> <u>3.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기간</u> <u>4. 지정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</u> <u>5. 지정신청인의 평가기준 및 방식</u> <u>6.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</u> <u>② 법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“사업계획, 재원조달능력 등”이란 「항만법시행규칙」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, 우선순위자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